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4 선고 2019가단1947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4. 10

판결 선고 2020. 4. 2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197,260원 및 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24.부터 2019. 7. 3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197,260원 및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24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일부 기각 부분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'소촉법'이라고 한다)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%에서 연 12%로 인하하는 내용의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)'이 2019. 6. 1. 시행되었으므로,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김범준

별지